第 7 章

1998年度 議會運營

第1節　第56回 臨時會
第2節　第57回 臨時會
第3節　第58回 臨時會

第 7 章　1998年度 議會運營

第1節　第56回 臨時會

제56회 청양군의회(임시회)는 복상교 의원외 7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998년 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되었다.

1. 第1次 本會議

가. 제56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56회 임시회의 회기는 2월 12일부터 2월 17일까지 6일간 운영키로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 제56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998. 2. 12(목) 10:00	1	개　　회　　식 1. 제56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군정에 관한 보고	
2. 13(금)	2	1. 군정에관한보고(계속)	
2. 14(토)	3	1. 군정에관한보고(계속)	
2. 15(일)		공　　휴　　일	일요일
2. 16(월)	4	1. 군정에관한보고(계속)	
2. 17(화)	5	1. 군정에관한보고(계속) 2. 일반안건처리	

나. 군정에관한보고

1998년도 군정에 관한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각 실·과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 발전담당관실, 문화공보실 소관이 보고되었다.

2. 第2次 本會議

가. 군정에관한보고(계속)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군정에 관한 보고가 계속되어 도의새마을과,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소관이 보고되었다.

3. 第3次 本會議

가. 군정에관한보고(계속)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군정에 관한 보고가 계속되어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이 보고되었다.

4. 第4次 本會議

가. 군정에관한보고(계속)

제3차 본회의에 이어 군정에 관한 보고가 계속되어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소관이 보고되었다.

5. 第5次 本會議

가. 군정에관한보고(계속)

제4차 본회의에 이어 군정에 관한 보고가 계속되어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소관이 보고되었다.

나. 청양군마을봉사의날운영조례안

○ 제출연월일 : 1998. 2. 14.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불편사항을 직접 찾아가 해결해 주는 실질적이고 종합적 봉사행정인 마을봉사의 날 행사를 연차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서비스 행정을 극대화시켜 나가면서 마을주민 스스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주민 자치정신을 배양하고 애향심을 불러일으켜 지역의 자치기반을 확충시켜 나가기 위함,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1998년 2월 19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청양군마을봉사의날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민에 대한 최대의 참봉사 행정을 실현하여 위민행정의 표상으로 삼고 주민화합과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마을봉사의 날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사계획) 군수는 매년 행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제3조(운영대상마을 선정기준) 군수는 행사운영 계획수립시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마을을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교통이 불편한 오지 산촌지역 마을
2. 지역개발이 지연되어 생활불편이 많은 마을
3. 마을이 집단화 되어 사업효과가 많은 마을
4. 주민화합이 잘되고 행사를 희망하는 마을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마을

제4조(운영주관) ① 행사는 군산하 기관 및 공무원이 참여하여 내무과장이 주관 운영한다.

② 필요시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민간단체의 참여와 협조를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운영밤위) 1마을 (법정리 기준) 1일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인근마을과 병행하거나 봉사 분야별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봉사대상사업) 봉사내용은 대상마을 실정에 따라 마을단위로 봉사사업을 선정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운영한다.

1. 이・미용봉사, 의료진료, 가축진료 및 방역활동 전개
2. 농기계, 가전제품, 가로등 수리봉사
3. 전기, 가스 위험물등 지도 점검
4. 마을안길 하천축대 보수 및 점검
5. 경로 및 어려운 이웃돕기 운동전개
6. 기타 마을공동사업 및 주민불편사항등 필요한 사업

제7조 (행사비지원) 군수는 다음 각호의 행사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행사참석자의 급식비
2. 각종 진료, 수리점검에 따른 부대 비용
3. 마을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비
4. 기타 행사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제8조(시행규칙) 이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청양군세조례개정조례안

○ 제출연월일 : 1998. 2. 13.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97. 8. 30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세법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그동안 군세조례에는 명시되지 않은 부분인 지방세의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등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 자치입법권에 실질적 의미를 부여하고, 지방세법과 군조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므로서 지방세정이 합리적으로 운용될수 있도록 하기위함.

○ 주요골자

○ 납세자 권리 헌장의 제정과 교부(안 제6조)

- 군수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고시하고 범칙사건 조사 또는 세무조사시 납세자에게 교부

○ 수정신고(안 제7조)

- 신고납부후 과세표준, 세액계산 변동이 있을 때에는 60일이내 신고

○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설치(안 제8조)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위하여 위원장 부군수외 6인이내 위원구성 (임기 2년)

○ 지방세심사위원회 구성(안 제9조)

- 이의신청 또는 과표결정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위원회에 세제분과위원회(신설), 이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 설치(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 포함 10인이내 구성)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1998년 2월 19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다.

라. 청양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제출연월일 : 1998. 2. 13.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지방자치에 맞는 지역 중소기업육성의 독자적 지원강화와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해소하여 자금난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1998년 2월 19일 집행기관에 이송 하였으며 상정된 조례안과 수정안은 다음과 같다.

청양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군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3.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이라 함은 상품홍보비, 시험연구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무및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기계 및 시설 개·보수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4. ”전업율“이라 함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업종의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자가소비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소비분의 생산액을 매출액에 합산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청양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② 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 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등) 기금은 군수가 관리·운용한다.
단,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거 동기금관련 융자중소기업체에 대한 이차보전 등을 위해 도지사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사용등) 기금에 의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기업운영에 필요한 단기운전자금
2.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의 시설자금 외의 자금

제7조(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자) 제6조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의 융자지원 대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중 청양군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2. 제조업 전업율이 50%이상인 사업자

제8조(자금의 차입등) 군수는 기구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제 2 장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융자

제9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군수는 매년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 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신청) ①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군수에게 융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대상자의 선정) ①군수는 제10조의 의한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적격여부를 검토하고 현지실사 및 신청서류 검토 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사업체의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②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조건등) 자금의 지원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군수는 제11조에 의한 기금융자대상자를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청양군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며 군수가 임명또는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2. 군실과장(재무과장, 산업과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
3. 충청은행 청양 지점장
4. 농협중앙회 청양군 지부장
5. 중소기업 협의회 청양군 협의회장
6. 정산, 비봉, 화성, 운곡 농공단지협의회장
7.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자

⑤제4항 제7호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금융자업체 선정 및 융자금액 심의
2,. 자금융자업체 대상업체의 사업계획 심사
3. 기업건실도 및 성장가능성 심사
4.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수당과 여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제 3 장 보 칙

제16조(사후관리) 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 지원자에 대하여 지원자금의 운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군수는 허위에 의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결산 및 보고) ①군수는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 마다 군의회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영관은 지역경제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공업가스계장이 된다.

단, 제5조에 의거 이를 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청양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중소기업육성과 관련되어 군에서 지원된 자금은 이 조례에의하여 지원된 자금으로 본다.

청양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

청양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및운용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중 "차입하거나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를 "차입 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13조제3항중 "기획감사실장이 된다"를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로 한다.

안 제13조제4항재6호중 "정산, 비봉, 화성, 운곡농공단지 협의회장"을 "관내 농공단지 협의회장"으로 한다.

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축산폐수처리장부지및진입로편입용지 매입)

○ 제출연월일 : 1998. 2. 11.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청양축산폐수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축산폐수처리장 건설에 소요되는 처리장부지 및 진입로 편입용지를 매입하기 위함.

○ 주요골자

ㅇ청양읍 정좌리 750 - 6번지등 26필지 10,859 ㎡(매입)

(단위 : ㎡)

구 분	계		전		답		하 천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계	26	10,859	4	3,094	20	6,980	2	785
진입로	18	4,211	-	-	19	4,211	-	-
사업장	8	6,648	4	3,094	3	2,769	2	785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1998년 2월 19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다.

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구봉산광해복구사업토지매입)

○ 제출연월일 : 1998. 2. 11.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구봉광산 광해복구사업을 통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해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시행후 조성되는 토지를 활용토록 하기위함.

○ 주요골자

ㅇ 남양면 구룡리 262 - 18번지등 44필지 61,853㎡(별첨조서)

(단위 : ㎡)

사업명	계		임 야		잡 종 지		대 지		답		기 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구봉광산 광해복구	44	61,853	23	26,124	14	26,382	2	1,722	2	446	3	7,179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1998년 2월 19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다.

사. 회의록서명의원선출

제5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용성의원, 복상교의원이 선출되었다.

第2節 第57回 臨時會

제57회 청양군의회(임시회)는 윤명희의원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998년 4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되었다.

1. 第1次 本會議

가. 제57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57회 임시회의 회기는 4월 9일, 1일간 운영키로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 제57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998. 4. 9(목) 10:00	1	개 회 식 1. 제57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주)청양유통주식매각의건 3. '98공유재산관계계획변경의건	

나. (주)청양유통주식매각의건

○ 제출연월일 : 1998. 4. 7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주)청양유통은 축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목우촌우유(청양읍소재)를 각 대리점에 수·배송하는 운송업체로 설립당시 민간이사(7명)의 사업참여를 위해 청양군이 주도하여 법인을 설립 기반조성을 한 회사인바, 그동안 이사회 등을 통해 민간이사 자율경영을 할 수 있도록 분기별 행정지도를하여 자신증식과 합리적운영으로 주식회사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으며, 지역민의 소득원 개발이라는 설립당시 사업목적이 달성되고 자립기반이 구축되어 이를 매각, 민영화하기 위함.

○ 주요골자

ㅇ군지분 17,500주 매각

(단위 : 천원)

명 칭	총투자액	청양군투자	민간인투자	액면가격	비 고
(주)청양유통 (주식수)	350,000 (70,000)	87,500 (17,500)	262,500 (52,500)	5,000원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1998년 4월 10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다.

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 제출연월일 : 1998. 2. 14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자치시대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을 실현하고자 먹는샘물 제조사업 허가를 받은 청양음료(주) 매입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하기 위함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1998년 4월 10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다.

. 라. 회의록서명의원선출

제5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재순의원, 김영주의원이 선출되었다.

第3節 第58回 臨時會

제58회 청양군의회(임시회)는 김영주의원외 8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998년 5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되었다.

1. 第1次 本會議

가. 제58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58회 임시회의 회기는 5월 6일부터 5월 13일까지 5일간 운영키로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 제58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998. 5. 6(수) 11:00	1	개 회 식 1. 제58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현장답사의건 3. 휴회의건	
5. 7 - 5. 12		휴 회	현지답사 활 동
5.13(수)		1. 일반안건처리	

나. 현장답사의건

1998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군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를 통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을 보완토록 촉구하며, 군민의 여론수렴등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으로 의회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5월 6일부터 5월 12일까지 군내 23개 사업장을 의원 전원이 답사키로 의결하였다.

다. 휴회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현장답사를 위하여 5월 7일부터 5월 12일까지 휴회키로 하였다.

2. 第2次 本會議

가. 청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출연월일 : 1998. 5. 2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97. 8. 30지방세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개정과 '98. 2.17 청양군세조례전문 개정에 따라 청양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를 맞도록 개정하여 지방세정(재무분야) 사무를 읍·면장에 권한를 위임하기 위함.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1998년 5월 14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청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읍·면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중 재무과 소관 일련번호 2번 "납세관리인 설정"을 "납세관리인 지정"으로 하고, 일련번호 11번 "농지세 감면신청"을 "개간 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으로 하며, 일련보호 13번 "취득세 자진신고"를 "취득세 신고납부등"으로 하고, 일련번호 27번 다음에 일련번호 28번내지 31번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출연월일 : 1998. 5. 2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당면한 경제난 극복대책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계획」에 의거 지방세제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감면범위 확대에 따라 감면조례를 개정 시행하기 위함.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1998년 5월 14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 (당해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이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제1항중 “자동차(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을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동조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제4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하며, 동조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 청양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라. 청양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심의보류되었다.

마. 청양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 제출연월일 : 1998. 5. 8.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초지법중 초지조성 및 전용허가시 그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는 초지조성심의위원회에 대하여 허가절차를 간소화 하는등 농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고자 초지법 제4조(초지조성심의위원회)가 4월 10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청양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를 폐지하기 위함.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1998년 5월 14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청양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청양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바.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 제출연월일 : 1998. 5. 9.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현 보건의료원 건물노후, 공간협소, 난방설비노후로 인하여 의료써비스 질이 저하되고 있어 이전 신축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써비스제공과 업무의 능률향상을 제고하고 군유(잡종)재산중 보존 부적합한 재산 및 분산된 재산을 매각하고 대체재산을 집단화하여 관리의 효율화와 재산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함.

○ 주요골자

- 매입대상토지(의료원 이전부지)

위 치	지역	면적(㎡)	토지소유자	취득예상상가(천원)	취득시기	비고
청 양 읍 읍내리261-1	일반 주거	토지6,617 건물2,011	한국담배 인삼공사	계 1,677,561 건 물 3,460 토 지 1,674,101	'98- 2000년중	

- 매각대상토지 (보존부적합토지)

(단위:천원)

매 각 대 상	재산	수량	면적(㎡)	과표또는 평가액
계				721,875
구.가내공업센타	토지 건물	1필지 1동	902 328	445,318
구.청양 체육관	토지 건물	1필지 1동	198 162	93,615
구. 도축장	토지 건물	1필지 1동	664 155	47,861
장곡상가 3호	토지 건물	1필지 1동	156 78	10,530
구.정산보건지소 부지·건물	토지 건물	1필지 1동	403 69.4	17,077
화성 정기시장 용도폐지된 부지	토지	6필지	1,110	64,933
기타 농경지 실경작자에게 매각	토지	13필지	7,311	19,894
사유건물 토지 매각등	토지	4필지	712	22,647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1998년 5월 14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다.

사. 회의록서명의원선출

제5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성종의원, 박효신의원이 선출되었다.